

2021년도 제2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9. 23.(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4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039건(안전번호 제2021-126466호~129648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126466호~126472호(순번 1번~7번)는 ☆☆☆☆☆에서 일본 영상물(영화)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126473호(순번 8번)는 ★★★★★ 질문에 대한 답변글과 함께 일본 영상물(영화)을 요약편집하여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게 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다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126474호~126487호(순번 9번~22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와 출판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126488호~126511호(순번 23번~46번), 126513호~126516호(순번 48번~51번)는 카페·블로그를 통하여 일본 영상물(방송)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

함. 다만, 안전번호 126489호, 126491호, 126492호(순번 24번, 26번, 27번)는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여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

안전번호 126512호(순번 47번)는 해당 블로그가 초기화되어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126517호(순번 52번)는 블로그를 통하여 일본 영상물(방송)의 웃긴 장면을 모아 복제·전송한 사안으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시정권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전번호 126518호~129648호(순번 53번~3183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7,78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511개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 2021-13496호~14006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중 2021. 9. 23. 현재 접속 가능한 5개 사

이트의 511개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4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4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8,03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3183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8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및 ●●●●●●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영화) ◎◎◎◎◎, ◇◇◇◇◇◇ 등을 우리말 더빙 등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8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영화 ◇◇◇◇◇◇ 전체 분량을 우리말 더빙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영화 ◆◆◆◆◆◆ 전체 분량(113분) 중 일부를 요약·편집(11분 43초)하여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1번~7번의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8번과 관련하여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을 편집하여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특별히 없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

순번 8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타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보충하기 위하여 영상물이 제작 및 작성되었으나, 질문자를 포함한 공중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 해당 방송의 한 회차 방송의 일부인 1/10 정도를 이용 중으로 그 분량이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해당 저작물 중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권리 없는 자의 요약 콘텐츠가 합법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영상저작물의 권리와 이용자 간 공정이용 해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

는 권리자가 직접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질문의 내용 자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불법복제물이 포함된 답변글 또한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에 부합하는 것으로, 영상저작물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 간단한 것임. 비록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복제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이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음.

종합하면, 순번 8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다소라도 있는 점,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게 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다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8번의 경우, 원 영상저작물의 전체 분량 중 10분의 1 정도의 분량만을 요약·편집하여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적은 분량은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영상물이 □□□□□ 답변에 대한 참고자료라면 11분 정도의 많은 분량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다만 □□□□□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 해소를 돕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 시 동사안에 대해 삭제의 시정권고를 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해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게시물이 2~3분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편집된 것이라면 시정권고 부결 의견으로 검토가 가능하였을 것이나, 11분 정도의 분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경고의 시정권고로 검토하였음.
- B 위원: 순번 1번~7번의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순번 8번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게 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다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위원: 같은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7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순번 8번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9번~22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와 출판물을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등과 출판물 △△△△△ 등을 각각 20포인트에서 17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4개 게시물임.
(순번 19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17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전체 분량(완결편)을 스캔본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9번~2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출판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번~22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3번~51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의 카페·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 ◀◀◀◀◀◀ 등을 우리말 자막 등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234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2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2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2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4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함.

이 중 순번 25번, 33번, 35번, 37번 게시물의 경우 2021. 9. 15. 기준 비공개로 전환된 것이 확인됨. 다만 이 경우 게시물이 삭제·전송중단된 경우와 달리 시정권고의 대상인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서로이웃을 맺은 범위의 공중에게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 언제든지 전체공개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또한, 순번 47번 게시물은 2021. 9. 15. 기준 ‘이 블로그는 초기화가 진행 중이어서 방문객의 접근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안내가 출력되고 있었으나, 이후 2021. 9. 23. 기준 사무처 재확인 결과, 해당 블로그 운영자에 의한 초기화가 완료되어 게시물이 모두 삭제되었음. 해당 블로그 초기화에 따라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시정권고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순번 24번, 26번, 27번(5건)의 게시물은 2021. 9. 15. 현재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3번~5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23번, 25번, 28번~46번, 48번~5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24번, 26번, 27번의 경우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순번 47번의 경우 블로그 초기화에 따라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블로그가 완전히 초기화되어 게시물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부결함이 타당함.

- C, D 위원: 이견 없음. 순번 47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순번 24번, 26번, 27번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합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3번~51번 중 순번 47번은 부결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되,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2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 운영자가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중 웃긴 장면들을 모아서 19분 4초 분량으로 편집한 영상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1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순번 5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임. 다만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장편 시리즈물인 ♣♣♣♣♣ 전체 중 웃긴 장면을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모아 편집한 것임. 공중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며 2차적저작물로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단순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과는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음. 한편 저작물 전체 또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대부분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으로 단편적인 장면만을 수집한 본 게시물 영상이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즉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이용 형태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직접 민·형사적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으로 생각됨.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부

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5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신고자가 권리자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일반인이 신고한 것임.
- A 위원: 원 영상저작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송되지 않았는지?
- B 위원: 그러함. 800회가 넘을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방송되었으며 극장판도 나와 있음.
- A 위원: 해당 게시물이 약 19분 분량이므로 그에 비하면 원 저작물의 분량은 100배도 더 넘을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원 저작물 한 화가 약 24분 분량인데, 현

보는 것에는 의문이 있음. 엔터테인먼트는 본질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웃긴 장면이 부차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됨. 웃긴 장면 모음 영상이 원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임.

- A 위원: 동 게시물이 ◆◆◆◆◆의 한 회에서만 모은 것이 아니고, 수년 간 방송된 수백 회 중에서 이 게시자가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들만을 모으고, 요약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용 의도와 분량,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임. 수백 회를 19분 짜리로 요약해서 만들더라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것임.
- A 위원: 이 게시물이 웃긴 장면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웃긴 장면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웃긴 장면들을 모아서 화면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정도로 편집만 한 것임. 별도의 줄거리를 가지고 구성한 것은 아님.
- A 위원: 동 사안에 대해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
- B, C, D 위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순번 52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53번~318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튀팍 파트 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334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튀팍 파트 2'를 70쿠키에 제공 중임. 시즌2의 제1화 전체 분량인 42분 34초를 제공하고 있음. 넷플릭스에서 2021. 6. 11. 오픈한 드라마임. 넷플릭스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슈퍼밴드 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403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슈퍼밴드 2'를 70포인트에 제공 중임. 시즌2의 제8화의 전체 분량인 2시간 6분 22초를 제공 중임. JTBC에서 2021. 8. 23. 공개한 방송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말리그넌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938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말리그넌트'를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인 1시간 51분 33초를 제공하고 있음. 워너브라더스코리아에서 2021. 9. 15. 공개한 영화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53번~318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53번~3183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3번~318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26517호(순번 52번)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21-126512호(순번 47번)는 부결함. 제2021-126473호(순번 8번)와 제2021-126489호(순번 24번), 제2021-126491호~126492호(순번 26번~27번)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26466호~126472호, 126474호~126488호, 126490호, 126493호~126516호, 126518호~129648호(순번 1번~7번, 9번~23번, 25번, 28번~51번, 53번~318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8쪽부터 21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3496호~14006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9. 30.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